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2960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94.9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, ㉥, ㉦, ㉧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C호 29.7㎡를 인도하고,

나. 1,500,000원 및 2024. 4. 1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효선

별지